

예산총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5,363,534	12,760,906
일반회계	384,395,215	11,531,856
특별회계	40,968,319	1,229,050
공기업특별회계	33,169,861	995,096
상수도공기업	16,763,289	502,899
하수도공기업	16,406,572	492,197
기타특별회계	7,798,458	233,95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4,400	3,132
의료급여기금운영	1,169,677	35,090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502,266	15,068
공영개발사업	400,892	12,027
농공지구조성사업	2,293,954	68,819
기반시설	20,542	616
장기미집행	496,193	14,886
수질개선	433,642	13,009
주택사업	2,376,892	71,30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24,77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8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